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2862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성, 권우상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D{E생}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2. 10.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0868 판결에 의하여 2017. 8. 4. 확정된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은 2022. 4. 6. 사망하였고, 아들인 D는 그 중 각 4분의 1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2022. 10. 18. D, 피고들 및 기타 상속인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D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은 동생이고 피고 C는 제수이다). 이에 따라 2022. 10.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지분)가 마저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위 각 부동산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G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D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D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 1) 피고들은 D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 2) F, D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상속받기로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나. 판단

1) 위 가. 1)항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 D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상속받기로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1)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정창근

별지

- 1)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명확하나,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